
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
(안 제13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·운영(안 제13조의2 신설)

개정안은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고(안 제13조의2제1항),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데이터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(안 제13조의2제2항), 데이터의 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(안 제13조의2제3항).

다른 법률에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¹⁾을 고려하여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

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제출받는 데이터의 범위에 개인정보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정함.

<안 제13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>

원 안	수 정 의 견
제13조의2(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·유통·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(이하 “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	제13조의2(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·운영) ① (원안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중앙행정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데이터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데이터(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)----- ----- 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, 데이터 수집·관리의 방법	③ (원안과 같음)

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~ 10. (생략)
- ③ ~ ⑤ (생략)

·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